

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수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대상자, 지원품목 및 지원액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제명 변경(안 제1조)

- 현행 : 「장애인복지법」
- 개정 :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변경(안 제2조)

- 현행 : 등록장애인
- 개정 :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휠체어 등을 지원받는 등록장애인

다.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품목 조정(안 제5조)

-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배터리는 지원품목에서 제외

라.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 변경(안 제6조)

-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→ 연간 15만원
- 일반장애인 : 연간 15만원 → 연간 8만원

마.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절차 보완(안 제7조)

·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 등 여부 확인

바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관한

문구 삽입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

(안 별지 제1호서식 ~ 별지 제4호서식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기존 편성예산 추경시 삭감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,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와”를 “다음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지원대상자”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(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전동스쿠터를 소유한 장애인 중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)”을 “(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및”을 “또는”으로, “지원센터”를 “센터”로, “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”를 “단체 또는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여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장은 단체 또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업체 중에서 수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.

1.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
2. 휠체어 등의 수리를 위해 긴급출동이 가능할 것.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장애인휠체어”를 “장애인 휠체어”로, “위해”를 “위하여”로, “실시한다”를 “실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장애인용시설 등 장애인”을 “장애인”으로, “장소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장소 중에서”로, “설치·운영한다”를 “설치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
2. 장애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·단체
3. 교통 관련 시설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기타 장애인들의 접근과”를 “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”로, “위해”를 “위하여”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법 제66조”를 “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”를 “등에 대한 수리비용(이하 “수리비용”이라 한다)의”로, “보조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지

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제외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경우에 한하여”를 “경우에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장애인으로서”를 “장애인으로 하며, 장애인별 수리비용 지원 기준은”으로, “같이 지원한다”를 “같다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
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: 연간 8만원 이내

제6조제3항 중 “장애인휠체어”를 “장애인 휠체어”로, “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”를 “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,”로, “악세사리”를 “액세서리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장애인이 관할거주지”를 “휠체어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”로, “제출하면,”을 “제출하여야 하고, 해당”으로, “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”를 “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관내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 등 여부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·면·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

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첨부하여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7조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읍·면·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, 수리업체”를 “수리센터”로, “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”를 “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 후 장애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장은 수리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때에는”으로, “취소한다”를 “취소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,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(종전의 제1호) 중 “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”을 “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발견되었을”을 “발견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수리비를”을 “수리비용을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따라”를 “따른 지도·점검을”로, “그 직무를 할”을 “할”로,

“내 보여야”를 “내보여야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리비용 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리를 신청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					
1. 인적사항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성명		생년월일		연락처	
주소					
장애명			장애등급	급호	
수급유형	☐ 국민기초수급자		☐ 차상위계층		☐ 일반
2. 수리 신청내용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보장구 유형	☐ 휠체어		☐ 전동휠체어		☐ 전동스쿠터
수리가 필요한 부위			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		
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					
○ 목적 :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○ 항목 : 신청인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장애명, 장애등급, 수급유형, 보장구유형 ○ 보유 및 이용기간 : 5년간 ○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동의 ☐ 미동의 ☐					
「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구미시장 귀하					
					수수료
					없음

[별지 제2호서식]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					
1. 장애인 인적사항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성명		생년월일		연락처	
주소					
장애명			장애등급	급 호	
수급유형	☐ 국민기초수급자 ☐ 차상위계층 ☐ 일반				
2. 수리 신청내용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보장구 유형	☐ 휠체어 ☐ 전동휠체어 ☐ 전동스쿠터				
수리가 필요한 부위			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		
「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. 년 월 일 구 미 시 장인 확인자 : 읍면사무소·동 주민센터 담당자 : (서명 또는 인) (○ ○ 수리센터장) 귀하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

업체명 :

기간 : . . . ~ . . .

[illegible]

297mm×210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4호서식]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완료 확인서					
1. 수리센터내역					
업체명			대표자		
주 소				전화번호	
수리 기사명			수리기사 자격증 번호		
2. 장애인 인적사항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성 명		생년월일		연락처	
주 소					
장애명			장애등급	급 호	
수급유형	☐ 국민기초수급자 ☐ 차상위계층 ☐ 일반				
3. 보장구 수리내역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보장구 유형	☐ 휠체어 ☐ 전동휠체어 ☐ 전동스쿠터				
수리 및 교체부위	수리비용 산출내역		청구금액		
			천 원		
「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수리업체 : (서명 또는 인) 구 미 시 장 확인자 : 읍면사무소·동 주민센터 담당자 : (서명 또는 인) 구 미 시 장 귀하					
※ 구비서류 1.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. 거래명세서 1부					수수료
					없음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 복지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미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, 생활보장,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,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	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다음과 ----- --.		
1. “장애인”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.	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		
2. “지원대상자”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(“전동휠체어”를 포함한다)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.	2. “지원대상자”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(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전동스쿠터를 소유한 장애인 중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.		

3. (생 략)

제3조(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)

① 구미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(이하"휠체어 등"이라 한다)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(이하"수리센터"라 한다)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

3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)

① -----
----- 또는 -----
----- 센터-----
----- 단체 또는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여 -----

----- 이 경우 시장은 단체 또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업체 중에서 수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.

1. 구미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
2. 휠체어 등의 수리를 위해 긴급출동이 가능할 것.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.

<삭 제>

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.

④ 시장과 수리센터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.

제4조(전동기기 충전소) 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용시설 등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·운영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시장은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, 읍·

③ ----- 장애인 휠체어 ----- 위하여 -----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전동기기 충전소) ① -----
----- 장애인-----

----- 다음 각 호의 장소 중에서 --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
2. 장애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·단체
3. 교통 관련 시설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<삭 제>

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, 교통관
련 시설 등 공공장소에 전동기
기 충전소를 설치·운영한다.

③ 시장은 기타 장애인들의 접
근과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
동기기 충전기의 설치·운영을
위해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
수 있다.

제5조(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)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
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
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
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단,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기
금에서 적용되는 비용은 제외한
다.

제6조(수리비용 지원기준) ① 제5
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
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
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
에 한하여 지원한다.

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
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
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
한다.

② ----- 장애인의 접근이 용
이하고 -----

위하여 -----
-----.

제5조(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) ----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
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
에 관한 법률」-- 등에 대한 수
리비용(이하 “수리비용”이라 한
다)의 --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-- . 다만, 국민건강보험공단 또
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
원되는 배터리 등은 제외한다.

제6조(수리비용 지원기준) ① ---

----- 경우
에만 -----.

② ----- 장애인
으로 하며, 장애인별 수리비용
지원기준은 -- 같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
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
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
는 일부를 연간 30만원 이내
에서 지원
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
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
는 일부를 연간 15만원 이내
에서 지원

③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
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
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
별도로 장착한 부품, 장비, 악세
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.

제7조(수리비용 지원절차) ① 장
애인이 관할거주지 읍·면·동
장애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
서를 제출하면, 읍·면·동장은
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
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하
다.

1.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

2. (생 략)

<신 설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
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
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
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
장애인 : 연간 8만원 이내

③ 장애인 휠체어 -----
--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
수리를 원칙으로 하고, -----
----- 액세
서리 -----.

제7조(수리비용 지원절차) ① 휠
체어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
는 거주지 -----
-- 제출하여야 하고, 해당 ----

-----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
정하여야 한다.

1. 신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
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
은 휠체어 등 여부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,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월케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. 단,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후 장애인이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③ 읍·면·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,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·면·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첨부하여 월케어 등의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⑤ 수리센터-----

----- 다음 달 10일

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읍·면·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8조(수리센터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한다.

1.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
2.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
3.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

제9조(지도·감독) ① (생략)

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 후 장애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수리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리센터 취소) -----

- 때에는 -----
취소할 수 있다.

3. -----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--

1. -----

-- 발견된 -----

2. ---- 수리비용을 -----

제9조(지도·감독) ① (현행과 같

② 제1항에 <u>따라</u> 관계 공무원이 <u>그 직무를 할 때에는</u>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<u>내 보여야</u> 한다.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.	음) ② ----- <u>따른 지도·점검을</u> - - <u>할</u> ----- ----- <u>내</u> <u>보여야</u> --. 제10조(시행규칙) ----- - <u>필요</u>----- -----.
--	--

관계법령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66조 삭제 <2015.12.29>

제66조(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·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.

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,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·대여·수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6.12.30.] [법률 제13662호, 2015.12.29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·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,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7조(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보조기기의 교부·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
2.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
3.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
4.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

제8조(보조기기 교부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보조기기 교부·대여 또는 사후관리
2.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·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, 보조기기의 교부·대여·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 생략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③ 생략

소관 실·과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류 은 주
	담 당	강 명 천 (480-5181)